

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 · 청년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토보고서

【이성수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11. 21.

사회건설위원회
전문위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
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토보고서

1. 경과

의안 제651호로 2025년 11월 7일 이성수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,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며, 제대군인 지원 및 비밀유지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구 조례를 현행화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변경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지원계획의 수립 변경(안 제 5조)
- 다.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신설(안 제12조)
- 라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함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5. 11. 7.~2025. 11. 13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개정 배경 및 취지

- 본 조례는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 및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, 가족 돌봄청소년·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(2024. 5. 16.)되었음.
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1)제3조에서는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 지원 및 생활안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,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한편,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 청년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들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세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의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한 것임.
 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는 의무복무 제대 군인을 「병역법」, 「군인사법」,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

-
- 1)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
 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·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, 복무 중에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·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,

- 「병역법」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육군·해병 2년, 해군 2년 2개월, 공군 2년 3개월(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각각 18개월, 20개월, 21개월로 단축시행 중)이며, 보충역 및 대체역의 경우 복무기간이 최대 36개월임을 고려할 때, 최대 3세 범위 내에서 지원 상한을 조정하는 것은 현행 복무기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는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의 연령 기준을 “34세 이하”에서 “39세 이하”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, 이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에서 정한 청년의 연령 기준을 준용하여 구 정책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.
- 안 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)제3항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2)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계획이 포함된 경우, 이를 별도의 지원계획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임.
 -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,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

2) 제35조(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(이하 “지역사회보장계획”이라 한다)을 4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연계를 강화함으로써,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임.

- 안 제12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지원 연령의 상한을 최대 3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함.

- 이를 통해 복무기간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, 가족돌봄의 책임을 지는 제대군인 청년층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임.

- 안 제13조(비밀유지 의무)는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, 복무 기간을 고려한 지원연령 상한 조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,
 - 이를 통해 가족돌봄의 책임을 지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층의 복지를 증진하고,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귀 지원 및 생활안정에 대한 책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

참고 자료

1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제대군인”이란 「병역법」, 「군인사법」 또는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[퇴역 · 면역(免役)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한 사람을 말한다.
2. “장기복무 제대군인”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, 장교 ·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중기복무 제대군인”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, 장교 ·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.
4. “의무복무 제대군인”이란 「병역법」, 「군인사법」 또는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, 보충역 또는 대체 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(年月數)로 계산하되,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 · 준사관 · 부사관 및 병(兵)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.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 ·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, 복무 중에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7. 11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 ·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2

병역법

제18조(현역의 복무)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. 다만,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.

② 현역병(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 3. 31.>

1. 육군: 2년

2. 해군: 2년 2개월. 다만, 해병은 2년으로 한다.

3. 공군: 2년 3개월

③ 현역병이 징역·금고·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,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 2. 4.>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9.>

1.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

2. 전상·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

3.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·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

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,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2.>

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로 한다. 다만, 전역 보류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5. 29.>

⑦ 국방부장관은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류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5. 29.>

⑧ 제4항에 따른 현역병의 전역 보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